

[일련번호 : 32]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같은 기준 제7조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다만,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건설사업자가 ◆◆ 임금을 일반 노무비(직접 인건비)로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공사 준공 시 동일인이 동일한 일자에 장비유도원으로 근무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과는 이를 노무비와의 중복 청구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다시 정산·지급하는 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중복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중 지급 내역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지급액(원)	부적정 내역
1	◆◆공사	'25.03.17. ~'25.08.08.		4,760,000	480,000원 중복 지급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중복 지급한 공사비를 해당 업체로부터 환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 및 증빙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